

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일자리  
정책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 월 31 일

여 수 시 장 2023.10.31



여수시 조례 제1974호

붙임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1부

#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수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자리 창출”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취약계층” 이란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,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일자리 관련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## 제2장 일자리 정책

**제5조(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
2.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
3.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
4.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5.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일자리 창출 사업)**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2. 관내 기업, 대학, 연구·지원기관,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
3. 청년·중장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사업
4.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
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취업 지원 사업)**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구인·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
2.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
3.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, 인턴 지원 사업
4. 채용박람회,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
5.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# 제3장 일자리 위원회

**제8조(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시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,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자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
를 둘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6조,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(互選)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국장, 교육복지국장,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여수시의회 의원
2. 관내 대학의 취업지원처장·과장
3. 지역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4.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0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
2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3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2조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5.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12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**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또는 위원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4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일자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

**제15조(일자리지원시설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1.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
2. 취업지원교육
3.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
4.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16조(행정·재정지원)**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
  2.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
  3. 일자리 관련 정보·교육·홍보에 필요한 사업
  4.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, 개인,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17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력)**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,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체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